

사전·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33호
2.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외 11명
3. 발의일자 : 2016. 11. 17.
4. 회부일자 : 2016. 11. 23.

II. 주 문

-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서울시의 도로상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토록 「학교보건법」,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개정을 건의함.

III. 제안이유

- 서울시의 경우 총 10개소의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¹⁾과 총 5,756개소의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²⁾이 승인·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체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로상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1) 서울시 사전면세점 : 동화, 신세계, 하나투어SM, 두산, 신라(장충점), 롯데(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2) 서울시 사후면세점 : 다양한 업종(가전제품판매점, 화장품판매점, 백화점, 성형외과, 약국, 안경원, 편의점, 마트 등)의 총 5,756개소(국세청 내부자료 / 2016.7.19. 기준)

-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의 경우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유해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토록 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사전면세점 및 사후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토록 「학교보건법」,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2. 기타사항 : 없음.

V. 이송처

1. 국 회 : 국회의장
2. 정 부 :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장, 국세청장

V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16년 11월 17일 김상훈 의원 외 11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533호로 발의되어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초·중·고 주변에 증가하고 있는 면세점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관광버스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면세점 입점을 금지하도록 「학교보건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면세점 입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현행 법령은 면세점(Duty-Free)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특허면세점

(보세면세점)과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면세점으로⁴⁾ 구분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⁵⁾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점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급수수료를 판매가격에서 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면세점(과세의무면제)이라고 합니다.

- 반면 사후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⁶⁾ 지정되어 외국인이 3만원 이상 재

3)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생략)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 다.(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5)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3.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1999.12.31.>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화를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출국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출국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면세판매장(Tax-Free)을 말합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이러한 사전면세점이 9곳, 사후면세점이 6,851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⁷⁾ 최근 이러한 면세점의 학교주변 입점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유발, 대형버스의 불법 유턴 등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등하교 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사후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가 학교 주변에까지 과도하게 입점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⁸⁾

[표1] 사전·사후면세점 비교

구분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부과 여부	관세	X	○
	개별소비세	X	X
	부가가치세	X	X
	환급수수료	X	○
지급방법		세금 제하고 계산	3만원 이상 재화 구입 후 3개월 내에 출국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출국시 환급
대상		해외출국 외국인, 해외출국 내국인	해외출국 외국인
자격취득 절차		<특허제> 공고(관세청) → 신청접수 → 심사 → 선정	<지정제> 지정신청서 제출(판매업자) → 관할 세무서장 → 요건 확인 후 지정여부 결정(7일 이내) → 지정 → 면세판 매장 지정증 신청인에게 교부
담당 기관		관세청	관할세무서
개소 수		9	6,851

4. 약사법에 의한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삭제 <2010.12.30.>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2016.6.30. 기준

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동아 1050호, 학교 앞 사후면세점 피켓 든 엄마들, 2016.8.10., pp22~26. 참고.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정부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교보건법」에⁹⁾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¹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는 이러한 면세점 입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면세점 과열 입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해서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¹¹⁾

[표2] 학교주변 각종 구역

개별법	규율내용 (규제지역)	학생안전지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보건법	유해시설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	차량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CCTV 설치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기호식품업소 관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9)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10) 「학교보건법」 제6조의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는 [붙임] 참고.

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관할 교육지원 교육장이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3] 사전면세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의 거리¹²⁾

순번	면세점명	주소(지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의 거리
1	동화 면세점	종로구 세종로 211	덕수초(129m)
2	신세계 면세점	중구 충무로 1가 54	일신유(392m), 남산초(385m)
3	하나투어SM 면세점	종로구 공평동 1	서울경운학교(389m)/운현초(411m)/풍문여 고(417m)/운현유(411m)/교동초(365m)
4	두산 면세점	중구 을지로 6가 18-12	성동글로벌경영고(392m)/광희초(454m)/봄 샘유(451m)/한양중(311m)/한양공고(311m)
5	신라 면세점(장충점)	중구 장충동2가 202	장원중(157m)/근화유(183m)/동국대(99m)
6	롯데 면세점(본점)	중구 소공동 1	-
7	롯데 면세점(코엑스점)	강남구 삼성동 159	서울정애학교(151m), 경기고(195m)
8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여의도유(113m) 성요셉유(43m)
9	HDC신라 면세점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남정초(병설유)(405m)/한강초(266m) /용산공고(318m)

※ 굵은글씨 부분은 면세점과 학교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 제8조 및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과 동 구역 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점 입점에 대한 금지나 제한에 대한 사항은 없어 사전·사후면세점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¹³⁾
-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학교주변의 사전·사후면세점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따른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137).
- 따라서 동 건의안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면세점의 입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위해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전·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사후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1(비밀유지)을 근거로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는 실정임.

13)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사후면세점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외 9명 발의)이 계류 중에 있음.

[붙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 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5호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사업장 규모 고려
	제7호	폐기물처리/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8호	가축사체/가죽가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14호	당구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결정(1997.0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7호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밭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시행령 제 6 조	제2호	만화가게	X	O	-	-
제3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X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제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범례			X : 절대금지시설, O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관 계 법 령

학교보건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55호, 2016.3.2., 일부개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7.4.27.>